(건축-010) ○○타워 리모델링현장 건축부속물 전도사고

공사명	제주시 ○○타워 5층 피트니스센터 리모델링 공사			
사고일시	2019년 7월 10일(수) 09:58분경		기상상태	Н
소재지	제주특별자치시	사고 종류	무너짐(붕괴·도괴)	
구조물 손실	_	인적피해	사망 1명	
장비 손실	-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(),	해당없음(〇)

가. 사고개요

1) 공사개요

○ 공사개요 : 확인불가 ○ 공사구분 : 리모델링

2) 사고경위

○○○타워 5층 피트니스센터 샤워장 철거공사 중 높이 2m의 자립식 벽체가 전도되면서 근로자가 깔려 사망함

3) 사고원인

○ 자립식 블록벽체(샤워부스)를 철거하던 중 진동과 충격에 의하여 약 2m 높이의 벽체(8인치블록) 하단부가 파단되면서 벽체 상부가 전도된 것으로 추정됨

나. 재발방지대책

- 해체공사 착수 전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에 제출·승인 받아야 한다.
- 구조물 해체 공사 전에 설계도면, 구조 계산서, 시방서, 공사비 내역서,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·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확인한 후 건물의 규모, 구조, 특징 등을 고려한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이 적정하게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.



